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71

발의연월일: 2021. 4. 28.

발 의 자:주철현・양정숙・최종윤

조오섭 · 이해식 · 박찬대

신정훈 · 김승남 · 위성곤

윤영덕 • 양향자 • 서삼석

소병훈 · 이병훈 · 송갑석

우워식 • 김원이 • 민형배

어기구 • 이용빈 • 이개호

김영진 · 이낙연 의원

(23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항만시설의 신설·개축·유지·보수 등에 관한 사업,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,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·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'여수세계박람회재단'의 권리·의무를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'여수광양항만공사'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여 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.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 한 특별법」 제4조제2항에 따른 '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·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'을 추가함으 로써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·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 지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6호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777호)의 의결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제 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·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	제8조(사업) ①
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
1. ~ 6의2. (생 략)	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6의3. 「여수세계박람회 기념
	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」
	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
	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
	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
	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7. • 8. (생 략)	7. · 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